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가정방문형 급여]

2026. 3.



1

서비스 일수 · 횟수를 늘려서 청구(복지용구 포함)

부당사례1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는 일부 기간 동안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하지 않았고, 전자태그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다니면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서 전자태그를 전송한 후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부당사례2

○○방문요양기관은 특정 수급자들에게 특정 요일(토)에 실제로 급여제공 하지 않았으나 사실과 다르게 급여제공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 후 급여비용 청구

적용
기준

-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련
근거

- 「고시」
-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 제16조(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 본 자료에 표기된 '고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법(시행령·시행규칙)'은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의미함

부당사례

○○방문요양의 A사회복지사는 202*. **.~202*. *(총 *개월)까지, B사회복지사는 202*. *(총 *개월) 기간 동안 지자체에 신고한 해당 직종(사회복지사)으로 근무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으나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공단 전산에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을 청구

적용
기준

- 제48조 (인력배치기준),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제53조(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제54조(급여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제57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라 급여비용을 청구 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 제48조 (인력배치기준),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 제53조(급여비용 가산의 유형)
- 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
-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부당사례1

○○○재가노인복지센터는 A수급자 등 **명에게 202*.*. ~ 202*.*. **기간 동안 총 00회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A요양보호사와 B요양보호사가 함께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 제공기록지(RFID)를 작성(전송)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부당사례2

○○○○복지센터는 관할 지자체에 요양보호사로 신고하지 않은 종사자가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기관 종사자(요양보호사)로 신고한 다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적용
기준

- 방문목욕 제공 시 이동보조와 몸씻기 등 방문목욕 급여 제공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미신고자 1인과 해당기관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관련
근거

-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제2024-295호(2024.12.31.), 제2025-27호(2025.2.11.)
- 제24조(방문목욕급여 제공기준)
-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 제26조(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방법)

부당사례1

○○방문요양기관의 A요양보호사는 B수급자에게 202*.*.*. 1일 2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외출 없이 수급자 자택에 머물면서 연속적으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방문간격이 2시간 이상인 것처럼 RFID를 자동전송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부당사례2

○○방문요양기관은

- ① C요양보호사는 D수급자에게 202*.*.*.*. ~ 202*.*.*.*. 기간 동안 2시간 방문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급여 제공기록지에 수급자의 동의여부와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2시간 이상 방문간격을 두고 1일 3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 청구
- ② E요양보호사는 F수급자에게 202*.*.*.*. ~ 202*.*.*.*. 기간 동안 방문요양급여 제공 중 2시간의 방문간격 없이 연속적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1일 2회 2시간 방문간격을 두고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을 작성하고 급여비용 청구

적용
기준

-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가정방문 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30분 이상~180분 이상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하는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 「고시」 제2024-123호(2024.6.27.), 제2024-295호(2024.12.31.)
- 제15조(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부당사례

○○노인복지센터는 5등급 A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던 중, 202*.*월 등 3개월 동안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해당 월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202*.*월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외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을 하지 않아 해당 월에 일체의 인지활동형 방문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인지활동형 방문급여비용 청구

적용
기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수급자에 대하여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프로그램 관리자가 제17조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에는 일체의 급여를 산정할 수 없다.

관련
근거

- 「고시」 제2022-301호(2022.12.28.)
-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부당사례1

○○방문요양센터는 A수급자에게 202*. **. (*개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사회복지사가 해당 월 모든 수급자를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 100%를 청구

부당사례2

○○방문요양기관의 B사회복지사는 202*.*.~*. 등(**개월) 동안, C사회복지사는 202*.*., 202*.*. 등(*개월) 동안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 외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한 것처럼 업무수행일지(RFID포함)를 작성(전송)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금을 청구 (실제 가정방문급여 제공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시간 중에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수정함)

적용
기준

-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수의 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점수의 80%를 산정하여야 한다.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에 따라 급여비용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기록,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기록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 및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관련
근거

- 「고시」 제2022-301호(2022. 12. 28.)부터 제2025-115호(2025. 7. 1.)까지, 제2024-123호(2024. 6. 27.)
-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부당사례1

○○방문요양기관은 202*.*~*(총*개월) 동안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3개월 연속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청구

부당사례2

○○○○재가노인복지센터는 202*.*에 전체 수급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급여비용 100% 청구

부당사례3

○○방문요양기관은 A수급자(202*.*~202*.*), B수급자(202*.*~202*.*), C수급자(202*.*~202*.*.)에게 해당 기간 동안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는 주로 공휴일과 주말(토·일)에 제공하였고, 가족관계가 아닌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평일(월~금)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급여관리 업무는 가족관계가 아닌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 중에만 수행함에 따라, 요양보호사와 가족 관계인 수급자의 급여관리 업무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누락하였음에도 해당 월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감액산정 하지 않고 청구

**적용
기준**

- 제69조의 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①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제5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수의 50% 미만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5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5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월에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관련
근거**

- 「고시」 제2024-295호(2024.12.31.)
-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